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박 영 모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여부



질의내용

선박건조 회사가 의장안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반부두(의장안벽용으로 사용 중)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기타 시설인 “잔교” 해당여부



사실관계

- 시설물명 : 예전부두(1998.3.9준공, 항만법에 의한 부두 축조)
- 제 원: 3만 DWT급 2선좌, 안벽 480M, 폭 28.8M
- 사용용도 : 의장안벽용으로 사용
- 구조 형식 : 잔교식 , Con'c(기둥시설 : 쇠파이프 (강관)포장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 조선대를,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잔교에 대하여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놓은 구조물이라고 하면서, 그 종류로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와 특수잔교(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계법령(항만법 및 국토해양실무)에서는 항만시설 중 안벽과 잔교를 구분(항만법 제2조)하고 있고, 잔교(棧橋)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부두 또는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 안벽(岸壁)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다. 귀문과 같이, 일반부두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艤裝岸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만법에 의한 부두시설인 안벽(岸壁)은 부두에서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승객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선박기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시설물의 구조 및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525, 2010. 2. 5.】



2.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 방법



질의내용

법인이 시가표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할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895, 1993.4.27)

다. 귀문의 경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함에 있어, 법인장부가액이 거래가액 및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조작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라.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 탈루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법인장부를 계상하는 등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령에 따라 처벌하고(지방세법 제84조), 포탈된 지방세는 부과·징수(지방세법 제85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534, 2010. 2. 5.】

3. 농업회사법인 추징 여부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야)을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임야관리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으나,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함.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임업은 농업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육림업”을 “입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임야에 나무식재, 관리자재 구입 및 임야관리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등 임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무식재 후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555, 2010. 2. 5.】

4.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납세지



질의내용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내용

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와 동일하며, 법인으로서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소재지가 됩니다.

나. 귀사가 그간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던 원천세 신고·납부업무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으로 기존과 달리 본사의 회계시스템에 따라 일괄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본사에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지방소득세(소득분)의 귀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76조의11(납세지 등)제2항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됩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역본부 관내사업장에서 고객보증금 수령, 이자비용 계산, 보증금 예치사유 해소시 지급전표작성 등 이자소득에 대한 사실상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614, 2010. 2. 9.】

5. 유흥주점 종과여부



질의내용

- 질의1> 경기침체로 유흥종사자 없이 운영하던 중 일시적으로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연중 3~4개월만 고급오락장으로 운영한 경우 재산세를 종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질의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에서 재산



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영업장면적 362.86㎡, 객실수 11개 등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 구비
-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04.1.5허가)
- 보건소 검진사실을 통해 유흥종사자 고용확인 ('08.5.23)
-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연중 3~4개월만 고급오락장으로 운영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세운영과-2287호('09.6.9) 및 지방세운영과-3689호('09.9.10) 등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의 적법성을 미리 검증하고 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지방세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서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지방세법에 정한 다른 구제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지방세법에 직접적으로 당해 처분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라.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통지하였고, 이후 심사청구에 대한 “채택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를 무시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상 신의칙(신뢰보호)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마. 한편, 당해 사건의 경우 우리부 유권해석이나 관련 기관의 판례 및 결정을 통해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방세법 해석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에서 채택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안정성 및 전국적인 세정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652, 2010. 2. 11.】

6. 국제선박 관련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내용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제선박을 임차하여 국제선박등록하고 항행하다가 해당 임차인이 그 국제선박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선박 변경등록(소유자 등 변경)을 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에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에서 국제총톤수 500톤이상, 선령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서 i)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ii)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iii)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상사법인외)이 소유한 선박 iv)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해당 선박은 취득 전에는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적취득조건나용선 방식으로 임차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있었고 취득 후에는 그 해당 선박의 국적, 소유자 명의 등을 변경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선박으로 등록중이었으므로 비록 취득한 후 6월내에 해당 국제선박에 대하여 국적, 소유자 명의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일인 최종연부금 지급시점에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 단서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825, 2010. 2. 26.】

7.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내용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과오납을 환부함에



있어 '00.2.10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09.12.24 근로소득세 경정결정토록 확정판결받음에 따라 국세와 같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부신청을 '10.1.24 신청하였을 경우 과오납금환부청구권 기산일을 '00.2.10의일과 '09.12.24의일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10763, 2004.4.27)인 바, 동 규정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함은 근로소득세를 경정토록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비로소 근로소득세가 감액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구 주민세)의 경우도 비로소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일 익일부터 과오납환부청구권이 발생되어 기산(행자부 세정과-1487호, 2004.6.7 참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 사실관계 등은 과세권자가 판단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831, 2010. 2. 26.】

8.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신설 내용

가. 새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 우리부 해석사례 등 반영(4건)



① 대체취득 비과세 기간 명확화

현 행	개 정
<신 설>	109-1 【대체취득 비과세 기간】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 된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계약일)이 시기(始期)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終期)이다.

②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근거 명확화

현 행	개 정
111-1 【과세표준】 1. ~ 3. <생 략> <신 설>	111-1 【과세표준】 1. ~ 3. <현행과 같음> 4. 분양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건축물과 빌트인(Built-in) 등을 선택품목으로 일체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교환 자동차 감면대상 명확화

현 행	개 정
<신 설>	268-1 【교환받는 자동차】 교환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회사로부터 금전으로 환급받아 취득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 감면

현 행	개 정
<신 설>	276-1 【다른 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본다.



○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일괄납입’ 규정 명확화(1건)

현 행	개 정
<신 설>	159의7...109-1 【일괄 납입】 <u>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 납입」이란 각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납입할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정산한 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u>

【지방세운영과-901, 2010. 3. 4.】

